

## 소규모펀드 공시

[ 2024년 6월 1일 ~ 2024년 6월 30일 ]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」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(기준일 : 2024년 6월 30일)

### 1) 소규모펀드 여부 공시(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의거)

회사명	펀드명1(운용펀드)	펀드명2(투자자펀드)	협회표준코드1 (운용펀드)	협회표준코드2 (투자자펀드)	발생일자
해당사항 없음					

### 2) 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공시(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 의거)

회사명	펀드명1(운용펀드)	펀드명2(투자자펀드)	협회표준코드1 (운용펀드)	협회표준코드2 (투자자펀드)	발생일자
해당사항 없음					

### 3) 소규모펀드 해소 공시

회사명	펀드코드 <sup>1)</sup> (운용펀드기준)	펀드명 <sup>1)</sup> (운용펀드기준)	효력발생일 <sup>2)</sup> (등록일)	최초설정일 <sup>2)</sup>	소규모 펀드가 된 시점 <sup>2)</sup>	정리 방법 <sup>3)</sup>	정리일 <sup>2)4)</sup>	비고
신영자산운용	K55209DX1377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2022-09-01	2022-09-20	2023-09-19	기타(추가판매)	2024-06-12	

1) 모자형구조인 경우는 모펀드 기준으로, 종유형 펀드의 경우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

2) YYYY-MM-DD 방식으로 기재

3) "임의해지", "합병", "모자형 이전", "모펀드교체", "기타" 중에 택1하여 기재. 단 기타의 경우 ( )안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. 예) 기타(추가판매) 등

4) 모자형 이전의 경우 수익자통지일을 소규모펀드 정리일로 기재

### 4) 소규모펀드 해소 공시(세부)

회사명	모자형구조 해당여부	펀드명1(운용펀드)	펀드명2(투자자펀드)	펀드코드 <sup>1)</sup> (운용펀드)	펀드코드 <sup>1)</sup> (투자자펀드)	근거법률 <sup>2)</sup>	정리일자
신영자산운용	N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C형	K55209DX1377	K55209DX1419	자본시장법	2024-06-12
신영자산운용	N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C-I형	K55209DX1377	K55209DX1443	자본시장법	2024-06-12
신영자산운용	N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C-Pe형	K55209DX1377	K55209DX1476	자본시장법	2024-06-12
신영자산운용	N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C-P2형	K55209DX1377	K55209DX1484	자본시장법	2024-06-12
신영자산운용	N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C-P2e형	K55209DX1377	K55209DX1492	자본시장법	2024-06-12
신영자산운용	N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S형	K55209DX1377	K55209DX1500	자본시장법	2024-06-12
신영자산운용	N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S-P형	K55209DX1377	K55209DX1518	자본시장법	2024-06-12
신영자산운용	N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S-P2형	K55209DX1377	K55209DX1526	자본시장법	2024-06-12
신영자산운용	N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신영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O형	K55209DX1377	K55209DX1534	자본시장법	2024-06-12

1) 펀드 코드는 반드시 12자리 코드로 기재

2) 근거법률은 "증투법", "간투법", "자본시장법" 중에 기재

※ 소규모펀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」 단서에 따라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해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